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기밀 불법 거래 행위 처벌 강화〉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0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7.
3. 회부연월일 : 2025.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를 한 경우 그 죄에 대한 벌칙을
현행 가중처벌(정한 형의 2분의1까지)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u>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u>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 ----- ----- ----- <u>무기 또는 5</u> <u>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 현행법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를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유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4년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방위력
개선사업 수주 단계에서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대가성 향응·
금품제공 등의 로비활동을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¹⁾하여 국익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불법 거래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임.

□ 이에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하는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군사기밀 불법 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을 강화할 경우 처벌과 범죄의 죄질 간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군사기밀 점유, 누설 등 위반 행위마다 벌칙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죄질에 관계없이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1) ①군인이 중국인(조선족)으로부터 3천4백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군사Ⅱ급비밀인 ‘○○작전계획 등’을 중국인(조선족)에게 제공

②○○방위산업체 대표A와 상무C는 사업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현역 군인에게 ○○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제공받고 식사 또는 술접대, 교통비 명목의 현금 등 5백8십여만원상당을 공여하고, 대표A는 현역군인이 전역후 방산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익을 주기로 약속

[「군사기밀 보호법」 벌칙 규정]

벌칙 규정		위반 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포함)을 위한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제13조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경우(제12조제1항)
10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제11조)
7년 이하 징역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제13조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되고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경우(제12조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제11조의2)

둘째, 상향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실제 군사기밀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에 비하여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법정형의 처벌 정도를 상향하더라도 실제 부과 형량은 경미하여 법정형과 선고형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상향된 법정형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사례]

구분	자유형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무죄	기타 *
장교	1	4	4	-	1	-
준·부사관	-	4	1	-	-	-
병	1	1	1	-	-	1
군무원	1	3	-	-	-	1
민간인	-	4	-	-	-	1
합계	3	16	2	-	1	3

* 처분기타 : 이송,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

※ 2022년~2025년까지 재판 결과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형벌이 비례하여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